

제재내용 공개안

1. 금융회사명 : (서울)한국양계농업협동조합

2. 제재조치일 : 2026. 6. 25.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임원	○ 주의적 경고 1명
직원	○ 감봉 3월 4명 ○ 견책 9명 ○ 주의 6명 ○ 퇴직자 위법사실 통지(주의 수준) 1명

4. 제재대상사실

가. 문책사항

(1) 주택담보대출 부당 취급

「신용협동조합법」 제83조의3, 동법 시행령 제20조의2 및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16조의6 등에 의하면 조합은 대출취급시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 차주의 차입목적, 차입금 규모, 상환기간 등에 대한 심사 및 분석 등을 통해 여신심사 및 사후관리 등의 여신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하지만 한국양계농협은 2021.7.14.~2025.1.24. 기간 중 경기도 소재 신축빌라에 대한 주택구입자금 목적의 담보대출 294건, 884억원 40백만원¹⁾을 취급하면서 대출심사용으로 제출된 매매(분양)계약서의 매매가격 등이 위·변조²⁾되었음을 알 수 있었음³⁾에도 그 진위 여부 확인 등 여신심사를 소홀히 한 결과 실제 소요자금에 비하여 과도한 규모의 대출을 지속적·반복적으로 취급한 사실이 있다.

1)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16조의6 시행(2021.7.14.) 이후 대출취급 규모

2) 지자체장 검인을 받은 매매(분양)계약서상 매매금액 등을 해당 지자체에 확인한 결과, 한국양계농협에 제출된 대출심사용 매매(분양)계약서는 매매금액이 허위로 증액된 매매(분양)계약서임

- 3) 대출심사용 계약서와 지자체장 검인 계약서는 계약일자, 계약금, 잔금일자 등이 동일해야 하나, 심사 소홀로 해당 내용이 상이한 점 등을 미확인

< 관련규정 >

1. 「신용협동조합법」 제83조의3 및 제95조
2.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제20조의2
3.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16조의6
4. 「상호금융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8조의4

(2) 민원처리 결과 허위보고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 및 제41조 등에 의하면 조합은 금융감독원이 민원 처리에 관한 사무업무 수행을 위해 자료의 제출을 요청한 때에는 자료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게을리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하지만 한국양계농협은 2024.11.22.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민원¹⁾ 처리를 위한 자료 제출을 요구²⁾받고, 자료 작성과정에서 민원내용과 관련된 검인계약서 및 계약금 영수증 등 대출서류가 구비되어 있지 않은 사실을 인지하여 해당 여신 취급지점에 대출서류 보완을 요청³⁾하고도, 2025.1.3. 금융감독원에 회신시 회신 내용에 대출 취급시 '위규 등 부당행위가 발견되지 않았음'으로 기재하는 한편, 본 건 관련 자체내부 감사를 실시한 사실이 없음에도 '4명업일 간 감사' 및 '감사 결과 규정을 위반한 사항 없었음'으로 기재하는 등 자료를 거짓으로 작성·제출한 사실이 있다.

- 1) 한국양계농협이 취급한 경기도 소재 신축빌라에 대한 주택구입자금 목적의 담보대출은 허위로 증액된 분양계약서에 의한 부당대출이라는 취지
- 2) 금융감독원은 담보물 주소, 분양가, 대출금액, 취급지점 등이 기재된 민원서류와 함께 한국양계농협 대출취급의 적정성 및 관련 규정 준수 여부에 대한 검토를 요청
- 3) A부서 직원은 과거 본인이 취급한 여신 3건과 관련하여 매매(분양)계약서에 검인 누락 사실을 확인하고, 여신취급 당시 업무처리가 미흡했다는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검인계약서 사본을 사후적으로 요청·수령하는 방법으로 편철서류를 조작

< 관련규정 >

1.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 및 제41조
2.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의2
3. 「신용협동조합법」 제83조, 제95조 등